

# 제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7 3층 / Tel 02-6243-4803 / Fax 02-6020-8514 / 담당:이경희실장

문서번호 202604-04 2026. 4. 9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자산운용감독국 / 자산운용총괄팀  
제 목 임원 선임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이자산운용(주)의 임원 선임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 임 : 1. 임원 선임 내용 1부  
2. 임원 선임 심사표 각 1부. 끝

제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본점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길 7, 3층(서초동)

작 성 자 : 이 경 희 실장

전화번호 : 02-6243-4803

(붙임 1)

## 임원 선임 내용

### 1. 선임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업무범위	주요경력 <sup>1)</sup>	겸직사항 <sup>2)</sup>	자격요건 확인결과 <sup>3)</sup>
이사	한성규 (韓成奎)	001014	2026.04.08	2029.04.07.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 2.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만료일	주요경력 <sup>1)</sup>	겸직사항 <sup>2)</sup>	비 고
대표이사 (상임, 등기)	이종석 (李宗錫)	770112	2025.09.09	2028.09.08	카카오 페이증권, KB 증권		
부사장 (상임, 등기)	김병관 (金秉寬)	660920	2025.09.09	2028.09.08	웰컴자산운용, 카카오 페이증권		
감사 (비상임, 등기)	김태구 (金泰求)	640312	2024.12.20	2027.12.19	노무라금융투자	칼빈대학교 조교수	
이사 (상임, 등기)	한성규 (韓成奎)	001014	2026.04.08	2029.04.07	해당사항 없음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성 명	한성규	직 위	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		해당사항 없음	
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사항 없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해당사항 없음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해당사항 없음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해당사항 없음	

성명	한성규	직위	이사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해당사항 없음</p>	
<p><u>종합의견</u> 임원 선임에 결격사유 없음</p>			
<p>2026년 4월 8일</p> <p>제이자산운용주식회사 임원 한성규 (인)</p> <p>제이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석 (인)</p>			

**【첨부서류】**

-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회보서 등)
-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

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5. 외국인의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6.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7.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